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 사 보 고 서

2017. 5. 18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나. 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5월 11일

라. 상정일자 :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7. 5. 16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박춘은)

가. 제안이유

- 국민의 문화예술·생활체육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조례의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4조(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)제2항 별표1의 진흥대상 사업의 전면정비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최광묵)

-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
  
- 주요내용은
  - 상위법령 근거를 명시하여 목적을 구체화·명확화 하였음.(안 제1조)
  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.
  - 조례 제4조(진흥사업대상과 보조금 지원 등)제2항 별표1의 진흥대상 사업을 전면정비 하였음.
  
- 본 조례안은 진흥사업대상[안 제4조제2항 관련(별표1)]의 전면 정비로 단순 나열식의 문화예술,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대상 및 범위의 포괄화로 매년 다각적으로 확대·변화하는 문화·체육 분야의 신속한 사업추진 및 육성·지원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216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7. 5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우리 구 문화예술 활동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업 대상을 정비하여 매년 다각적으로 변모하는 문화예술·체육 분야 사업을 적절하게 육성·지원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우리 구 문화예술 활동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구청장이 지원하는 사업대상의 정비 (안 별표1)

나.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, 「국민체육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의견 제출

- 진흥사업 대상 일부 행사에 대하여 총 행사비의 30% 이상을 경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개정취지와는 별개의 사항으로 존치하는 것이 행사 본연의 성격 유지를 위해 최소한 준수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, 현 조항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 제출 및 반영

## 별표1 비교

※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, 공연행사, 세시풍속 행사 등은 경품이 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만 제공가능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4) 인권영향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(2017.3.30. ~ 4.19. /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**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(전통문화예술보존 및 계승을 포함한다), 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**”를 “**「문화예술진흥법」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문화예술진흥활동, 전통문화예술의 발전·계승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여 영등포구민의 여가 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**”로 한다.

제2조 제1호중 “**이라 함은 구민의 체위증진**”을 “**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과 체력증진**”으로 하고, 제2호~제5호 중 “**이라 함은**”을 “**이란**”으로 하며, 제6호 “**라 함은**”은 “**란**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**영등포구청장**”을 “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**”으로 하며, “**체위증진**”을 “**건강 및 체력 증진**”으로 한다.

제5조 제1호 중 “**체위증진**”을 “**건강 및 체력증진**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제5조제1호, 제2호 규정**”을 “**제5조제1호 및 제2호**”로, “**같은, 그외 과목추가 선정은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**”를 “**같다**”로 한다.

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다음**”을 “**구청장은 다음**”으로 한다.

제9조 제1항 중 “**무료**”를 “**수강료는 무료**”로 한다.

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**각호**”를 “**각 호의 어느 하나**”로 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## 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
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체육행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각종 체육행사: 구(동)민체육대회, 건강 달리기대회, 서울시민체육대회, 장애인체육대회 등</li> <li>2. 종목별대회: 각 종목별 구청장배(기), 협회 (연맹)장배(기) 대회, 유·청소년 축구대회 등</li> <li>3. 체육교실: 구·동 생활체육교실, 기타 체육교실 등</li> <li>4. 스포츠교류 : 국·내외, 자매결연지 스포츠 교류 행사</li> </ol>	개최 및 지원
체육단체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체육단체; 구 체육회, 구 장애인체육회, 구 태권도 시범단 등</li> <li>2. 체육동호인: 체육대회 참가, 학교 및 일반체육 시설 사용 등</li> <li>3. 체육꿈나무: 운동(경기)부 육성학교, 생활체육 유소년 단체 등</li> </ol>	육성 및 지원
문화행사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연 : 문화예술 보호·육성 및 문화향유 기회 보장을 위해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 행사</li> <li>2. 전시 :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상설 및 기획전시, 작품집 발간, 공모전</li> <li>3. 전통문화행사 : 무형문화재, 의례 재현, 세시풍속(부군당제, 단오제, 정월대보름 등) 전통문화 계승·발전을 위한 행사</li> <li>4. 국제문화행사 : 영등포구를 주된 개최지로 하는 국제적 행사(영화제, 음악제, 무용제, 아트마켓 등)</li> <li>5. 문화예술교류 :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</li> <li>6. 그 밖의 문화행사 :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문화행사 외에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</li> </ol>	개최 및 지원
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지역축제	1. 영등포의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구 대표축제 2. 지역 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축제 3. 영등포의 문화도시 조성구 이미지 향상을 위해 개최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문화예술축제	개최 및 지원
예술인 및 문화단체	1. 영등포문화원 2.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3.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관내 문화 예술인 및 동호회	육성 및 지원
기타 행사	1. 조찬기도회 등 종무활동	지원

※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, 공연행사, 세시풍속 행사 등은 경품이 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만 제공가능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구민의 체위 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(전통문화예술보존 및 계승을 포함한다), 생활체육활동 등의 진흥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문화예술진흥법</u>」 및 「<u>국민체육진흥법</u>」에 따라 <u>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문화예술진흥활동, 전통문화예술의 발전·계승 및 생활체육의 진흥을 도모하여 영등포구민의 여가 선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생활체육교실</u>”이라 함은 <u>구민의 체위증진을 위한 일상적이고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교육, 보급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.</u></p> <p>2. “<u>레크레이션</u>”이라 함은 <u>심신의 단련과 활력의 재충전을 위한 오락 또는 제1호 과목에 포함되지 않는 오락형태의 운동을 말한다.</u></p> <p>3. “<u>문화예술</u>”이라 함은 <u>자아능력 개발과 보다 다양하고 격조 있는 삶의 영위를 위하여 창작, 표현(공연 등)하는 활동을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<u>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의 건강과 체력증진</u>----- -----.</p> <p>2. 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3. -----<u>이란</u>----- ----- -----.</p>



4. “교양기술”이라 함은 사회활동에  
서 요구되는 전문지식, 교양 등을  
말한다.

5. “건전여가교실”이라 함은 제2호,  
제3호, 제4호에 해당하는 과목(종  
목)을 교육, 보급하는 시설 및 장  
소를 말한다.

6. “전통문화”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 
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 
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  
시풍속 등을 말한다.

제3조(생활체육교실 등의 진흥) ①  
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  
다)은 구민의 체위증진과 여가를  
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생활  
체육교실, 건전여가교실(이하 “교  
실”이라 한다)을 설치 운영한다.

② (생략)

제5조(교실기능) 교실의 기능은 다음  
각 호와 같다.

1.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 체육  
교육
2. (생략)
3. (생략)
4. (생략)

제6조(교육과목 등) ①제5조제1호,  
제2호 규정에 따른 교육 대상과목

4. -----이란 -----  
-----.

5. -----이란 -----  
-----  
-----.

6. -----란 -----  
-----  
-----.

제3조(생활체육교실 등의 진흥) ①  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-----  
----- 건강 및 체력 증진-----  
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5조(교실기능) -----  
-----.

1. --- 건강 및 체력 증진-----  
-
2. (현행과 같음)
3. (현행과 같음)
4. (현행과 같음)

제6조(교육과목 등) ①제5조제1호  
및 제2호-----

은 국민의 선호도, 내용의 다양화,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대상과목은 별표 2와 같고, 그외 과목추가 선정은 구청장 방침으로 한다.

② 삭 제

제8조의2(강사의 위촉 해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.

- 1. ~ 2. (생략)

제9조(수강료) ①교실의 효율적 운영과 교육의 적극 참여 유도를 위하여 무료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이용자에게 장소사용료 또는 교실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수강료로 징수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2조(위탁 취소) 구청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. ~ 3. (생략)

-----  
-----  
-----같다.

제8조의2(강사의 위촉 해제) 구청장은 다음 -----

- 1. ~ 2. (현행과 같음)

제9조(수강료) ①-----  
----- 수강료는  
무료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위탁 취소) -----  
----- 각 호의 어느 하나-----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
[별표 1]

**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**

구분	행 사 명	대상 및 범위, 방법	비고
체육 행사	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	- 대상: 동민체육대회, 건강달리기대회,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, 장애인체육대회 등 - 내용 · 대회참가자에 대한 시상금품,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 · 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	정기
	종목별대회 개최 및 지원	- 대상: 각 종목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대회, 유·청소년 축구대회 등 - 내용: 각 종목별 행사주관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	정기
	체육동호인 육성·지원	- 대상: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 및 지역 주민 의 학교시설 사용료 지원 등 - 내용 · 전국·시·도 단위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종목별 연 합회에 대한 참가비 지원 ·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활동이나 생활체육활동 등을 위하여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의 학교시설을 6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지원	수시
	체육관련 단체의 운영	- 대상: 구 체육회, 구 생활체육회 등 - 내용: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	연중

[별표 1]

**진흥사업대상(제4조제2항 관련)**
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체육 행사	1. 각종 체육행사: 구(동)민체육대회, 건강 달리기대 회, 서울시민체육대회, 장애인체육대회 등 2. 종목별대회: 각 종목별 구청장배(기), 협회 (연맹) 장배(기) 대회, 유·청소년 축구대회 등 3. 체육교실: 구·동 생활체육교실, 기타 체육교실 등 4. 스포츠교류 : 국·내외, 자매결연지 스포츠 교류 행 사	개최 및 지원
체육 단체	1. 체육단체: 구 체육회, 구 장애인체육회, 구 태권도 시범단 등 2. 체육동호인: 체육대회 참가, 학교 및 일반체육 시설 사용 등 3. 체육꿈나무: 운동(경기)부 육성학교, 생활체육 유소 년 단체 등	육성 및 지원

구분	행 사 명	대상 및 범위, 방법	비고
	지원	- 대상: 구 태권도시범단 - 내용: 시범단 운영에 관한 경비 지원	연중
	체육꿈나무 육성·지원	- 대상: 운동경기부 육성 학교, 생활체육 유소년 단체 등 - 내용: 소년체전 등 각종 대회 참가, 훈련 등 꿈나무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	수시
	체육교실 육성·지원	- 대상: 구·동 생활체육교실, 구민1인1스포츠 갖기 운동, 안양천건강체조교실 등 - 내용: 구민 체위증진을 위한 생활체육교육의 무료 또는 유료강좌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	연중
문화 예술 행사 개최	공연행사	- 대상: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, 작은 문화마당(야 외공연 등), 구민노래자랑, 좋은영화무료 상 영 등 - 연예인 초청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 화예술의 무료공연, 자유공연(주민자율참여 공 연), 생활체육 시범공연 - 경연대회의 경우 경연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, 관객에게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 능) 지급	정기
	전시행사	- 대상: 목련전, 영등포사진공모전	정기
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문화 행사	1. 공연 : 문화예술 보호·육성 및 문화향유 기회 보장 을 위해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 행사 2. 전시 : 문화시설 또는 개방된 공간에서 무료로 운영 하는 상설 및 기획전시, 작품집 발간, 공모전 3. 전통문화행사 : 무형문화재, 의례 재현, 세시풍속 (부군당제, 단오제, 정월대보름 등) 전통문화 계 승·발전을 위한 행사 4. 국제문화행사 : 영등포구를 주된 개최지로 하는 국 제적 행사(영화제, 음악제, 무용제, 아트마켓 등) 5. 문화예술교류 : 지자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	개최 및 지원

구분	행 사 명	대상 및 범위, 방법	비고
		- 문학, 미술(응용미술 포함), 서예, 사진 등 예술인 작품 무료전시회 - 작품집 발간 관람 예술인에게 배부 - 공모전 경우 공모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 지급	
	문화산업단체초청공연행사	- 문화예술의 보호·육성을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산업단체 및 문화예술단체 초청 문화예술 무료공연	수시
문화 예술 예산 지원	세시풍속	- 전래 세시풍속 행사(귀불놀이, 척사대회, 단오절행사 등) - 경기참가자에게 시상금, 시상품, 경품(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 제공가능) 지급	정기
	공연행사	-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및 각 예술단체, 관내 교육기관(초, 중, 고)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정한 문화예술의 공연	수시
	전시행사	- 서예·사진·미술협회 등 예술단체 전시회	수시
	전통문화행사	- 부군당: 상산전(영등포동), 당산동부군당(당산2동), 방학곶지부군당(영등포본동), 도당(신길3동), 도림동당제(도림동) - 각 제주 또는 책임관리인에게 행사지원금 지원	정기
	문화행사참가	- 대상: 영등포문화원,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회원, 그 밖에 구에서 선발된 인원 - 국내 타 자치단체 문화행사참가 및 초청 소요경비	수시
	문래예술	- 분야 : 공연, 연극, 창작예술, 전시회 등	정기
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	6. 그 밖의 문화행사 :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된 문화행사 외에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	
지역 축제	1. 영등포의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구 대표축제 2. 지역 문화단체 또는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지역문화 발전과 구민화합을 위해 정례화하여 개최하는 축제 3. 영등포의 문화도시 조성 과 구 이미지 향상을 위해 개최 또는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문화예술축제	개최 및 지원

구분	행 사 명	대상 및 범위, 방법	비고
	창작촌 창작활동 지원	- 공모전의 경우 심사에 의해 선정된 개인 및 단체에 창작활동비 지원	
	예술단체 운영지원	-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	정기
국내 · 외	문화행사 개최, 참가	- 대상: 문화예술인, 일반인, 학생, 공무원 등 - 상호 문화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소요경비 지원	수시
자매 결연 단체 행사	지역축제 행사교류	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등 - 상호지역행사 참가 및 초청 - 차량 및 숙박비 등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	수시
	어린이문화 체험단 상호교류	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초·중·고등학교 어린이 - 상호 문화체험행사 참가 및 초청경비 - 숙박비, 관람경비, 선물구매비, 차량지원 등 행사 소요경비	수시
	스포츠교류	- 대상: 자매결연지역 일반인 및 공무원 - 상호 스포츠 교류 - 행사진행 소요경비 지원	수시
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예술인 및 문화 단체	1. 영등포문화원 2. 영등포예술인총연합회 3. 문화예술 역량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관내 문화예술인 및 동호회	육성 및 지원

구분	행 사 명	대상 및 범위, 방법	비고
기타 행사 지원	조찬기도회	- 대상: 영등포구교구협의회원, 구·동 간부, 신우회원 등 - 관내교회 및 구청 개최시 행사 지원금 지원	수시

구분	대상 및 범위	방법
기타 행사	1. 조찬기도회 등 종무활동	지원

※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, 공연행사, 세시풍속 행사 등은 경품이 총행사비의 30퍼센트 이내에서만 제공가능